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9. 16 선고 2020가단42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후

변 론 종 결 2021. 8. 12.

판 결 선 고 2021. 9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전 324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. 7. 14. 접수 제199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망 D의 5남 E의 아들인 F의 딸로서, E의 손녀이다. 피고는 망 D의 2남 G의 아들인 H의 아들이고, G의 손자이다.

나. 거제시 C 전 324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망 D가 사정받은 후 망 I를 거쳐 1927. 11. 18. 망 D의 5남인 E 앞으로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, E는 1941. 4. 10.경 사망하였다.

다. 망 D의 4남인 J은 1940. 5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0. 5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J은 1960. 10. 27.경 사망하였다.

라. 피고는 1994. 3. 19.경 보증인 K, 망 L, 망 M로부터 “피고가 1984. 10. 10.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”는 내용으로 보증서(이하 ‘이 사건 보증서’라 한다)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1994. 6. 2.경 거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. 10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, 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. 7. 14. 접수 제1997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J의 배우자인 N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조부인 E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E로부터의 상속을 주장하고 있고,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망 E의 소유이고, 망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J이나 망 G에게 증여 또는 매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. 피고는

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,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다50044 판결,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조부인 망 E의 소유라고 주장하나,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, 즉,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,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이는 망 E의 사망 전인 1940. 5. 22. 이루어진 점, ② 원고의 부친인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거제시 O 대 238㎡ 중 212/238 지분에 관하여 1981. 8. 28.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)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갑 제9, 10,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E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더라도,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정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혜승